

2024년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공고

2024년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선정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4년 10월 14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사업과제

사업과	과제명	주요내용	사업기간	구분	'24년 예산 ³⁾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자살시도자 사례 관리, 지역 사회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자살시도자의 자살재시도 방지	'24.선정일 ~ '28.12.31. (5년)	신규 ¹⁾	1인 기관	4,950만원
					2인 기관	9,900만원
					3인 기관	14,400만원
					24시간	35,800만원
				확대 ²⁾	1인 → 2인기관	9,900만원
					1인 → 3인기관 2인	14,400만원
2인 → 24시간 3인	35,800만원					

- 2024년 처음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혹은 기존 수행기관 중 재공모 기관)으로 기관 운영 형태(주중, 주말) 및 사례관리자 채용 규모에 따라 구분
- 기존 수행기관이 사례관리자 인원별 기관 유형을 확대하는 경우
- 12개월 수행기준 총예산으로, 실제 사업 시행 시기에 따라 예산은 변경될 수 있음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의 정서적 안정을 촉진하고, 필요한 치료·상담 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자살 재시도 및 자살 예방

□ 사업내용

구분	세부내용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역할) 자살시도자에 대한 신체적 안정화, 정신과적 치료 및 퇴원 후 최소 1개월 이상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구성) 사례관리자, 응급의학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 등으로 사례관리팀 구성 * 정신건강전문요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기관 유형	1인·2인·3인 기관(주중 운영)	24시간 기관(주말, 야간 포함 운영)
	전담 인력	1~3인 배치	총 인원 8인 이내에서 조정 가능 * 최소 5인 이상 고용 필수
	운영시간	주 5일	주 7일 24시간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	○ 응급의료기관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한 자살시도자 관리 협력체계 구축 ○ 자살시도자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정기회의 추진 * 응급의학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사례관리자 참석		

□ 사업 기간

○ '24. 선정일. ~ '28. 12. 31.(5년)

3. 신청기준

기관유형	공통 기준	응급실 내원자 자살시도자 수	
신규기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 아래 ①~③의 조건을 모두 충족 하는 기관 ① 의료기관의 장이 사업책임자가 되며 정신건강의학과와 응급의학과가 모두 사업에 참여하고, 두 과가 본 사업참여를 위한 공동 사업계획 작성 ② 사업수행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1개소 이상과 본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 ③ 사례관리팀 사무공간 확보	1인 기관	'22~'23년 NEDIS 평균 자해·자살 시도 건수 최소 50건 이상 100건 미만
		2인 기관	'22~'23년 NEDIS 평균 자해·자살 시도 건수 최소 100건 이상 300건 미만 * 내원 자살시도자 수 100명 미만인 경우 지역적 필요성에 따라 지원 가능
		3인 기관	'22~'23년 NEDIS 평균 자해·자살 시도 건수 최소 300건 이상
		24시간	'23년 NEDIS 기준, 총 내원 건수 300건 이상
확대기관		'23년 SPEDIS 기준 총 내원자 수 300명 이상 또는 서비스 동의자 수 240명 이상 ※ 그 외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생명사랑위기 대응센터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매년 사업수행기관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지속 참여 여부 평가('28년)

** 사무공간의 원내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신청 기관에 한해 병원 외 사무공간 임차 조건부 허용 (자살시도자 내원 시 즉시 대응 가능한 위치, 사례관리 업무용으로 사용, 임차료 월 1백만원 이내)

□ 기관유형별 세부 운영내용

기관 유형	사후관리 대상자	운영시간	사례 관리자	비고
1인 기관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주중(월~금) 근무시간	1명	정신과 진료과목 미개설시 정신과 진료 가능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2인 기관		상동	2명	-
3인 기관		상동	3명	-
24시간		주 7일 (공휴일, 야간 포함)	5~8명	-

* (컨소시엄 구성) 정신과 전문의(전공의)가 상주하는 응급의료센터를 협진 기관으로 지정, 원격자문을 통해 평가 후 사후관리 실시

4. 신청서 제출 ※ 사업계획서 양식에 따라 작성(붙임 참조)

□ 공고 및 접수 기간

○ 2024. 10. 14.(월) ~ 2024. 11. 1.(금)

※ 당일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문의: ☎ 044-202-3896 / 044-202-3893)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제출공문 각 1부

□ 제출 방법

○ 전자우편(kksjeong@korea.kr)

5. 기관 선정

○ 수행기관 시·도 지역분포 및 응급실 내원 자살·자해 환자 수 등 고려

○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평가 항목*의 심사 기준에 따라 서면 평가

* 수행기관 적합성(40점), 사업수행계획 타당성(60점)

○ 선정기관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지 및 개별통보

6.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1, 2차 분할 지급하되, 1차 지급시 총사업비의 70% 지급

○ 사업 완료 시 15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수행기관 전체 회계법인을 통한 위탁정산 실시

7. 사업참여에 따른 혜택

○ 응급의료기관 평가 시 가점(0.5점), 우수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자살시도자 대상 의료비 지원

8.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 기재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은 형사 처분 및 보조금 환수조치
- 사업 수행과정이나 완료 후 우리 부 또는 우리 부 의뢰 평가기관에서 사업평가를 위한 자료나 현장 확인 요구 시 반드시 협조할 것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따름

요 약 문

사 업 명			
공모 사업명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사업책임자		사업수행기관	
사 업 비	총 계	보조금	기 타
	천원	천원	천원
사업기간	2024. . . - . . . (개월)		
사 업 내 용 요 약			
○ 사업의 필요성			
○ 사업의 목적			
- 목적			
- 목표			
○ 사업의 내용 및 수행방법			
- 사업 내용			
- 사업수행 방법			
○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얻어지는 구체적인 효과			
- 사업의 활용·확산을 위한 향후 계획			

1. 사업의 필요성

- ※ 응모 분야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관련 근거자료(지역 현황 등) 제시
- ※ '22년, '23년 자살·자해 내원 환자 수(NEDIS) 제시(필수입력)
- ※ **재공모 기관은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수행지표 제시**
(내원 자살시도자 수, 초기평가수행률, 서비스 동의율, 사례관리서비스 수행률, 지역서비스 연계율)

2. 사업목적

3. 성과지표

사업 목표	전략·활동	성과지표		측정방법
		기준	목표치	

- ※ **응급실 사업 전체 수행기관 평균 수행률을 참고하여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22년) 초기평가수행률 70.4%, 서비스 동의율 64.7%, 사례관리서비스 수행률 69.4%, 지역서비스 연계율 38.3%)
- **목표:** 사업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기술하되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함
(예, OO지역 청소년 흡연율을 3% 감소시킨다)
- **전략과 활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될 자원투입, 활동 목록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예, 금연학교 정책을 개발한다. 금연관련지식수준을 향상시킨다.)
- **기준:** 목표 수준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국내 및 국제적 기준, 전년도 실적 등의 근거를 제시(예, 전국 청소년 흡연율 13.3%, 전년도 OO지역 청소년 흡연율 15%)
- **목표치:** 사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수준(예, 청소년 흡연율 12%)
- **측정방법:** 목표달성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예, 설문조사)

4.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

- ※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예: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의 원내 대응 프로세스 및 업무절차 등)

5. 외부자원 활용

번호	협력기관	협력내용	연속성(√)
1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체계 구축	<input type="checkbox"/>
2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한 자살시도자 지역사회 사례관리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거나 협력을 하는 주요단체의 목록 기술(예, 유관기관, 단체, 지역사회, 협회 등)하고 협력내용(후원, 자문 등), 협력의 연속성 여부(예: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자문, 후원 참여 등)를 체크

6. 사업예산

1) 재원조달

구분	보조금	기타 예산		총액
		자체예산	기타	
금액(천원)				
백분율(%)				

※ '기타'항목에는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액도 표시

2) 세부예산

(1) 건강증진기금 산출내역 * 해당 항목만 기재

구분	비목명	산출내역	금액 (천원)	비율(%)	
				구분	전체
인건비					
여비					
운영비	- 일반수용비				
	- 공공요금 및 체세				
	- 임차료				
	- 복리후생비				
	- 기타운영비				
직무 수행경비					
자산취득비					
	전체 총액				100

7. 사업수행 조직구성 및 인력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사업책임자 : 병원장
센터전용전화 번호 :

센터장
 성명 :
 소속 :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중 택일)

부센터장
 성명 :
 소속 : (센터장이 정신건강의학과일 경우, 부센터장은 응급의학과 소속 전문의)

<p>사례관리자 1 성명 : 000 소속 : 병원(생명사랑 위기대응 센터) 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p>	<p>사례관리자 2 성명 : 000 소속 : 병원(생명사랑 위기대응 센터) 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p>
---	---

※ 센터장과 부센터장 반드시 임명
 ※ 사업수행조직은 응급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모두 포함되도록 구성
 ※ 사례관리자가 채용되지 않은 기관은 미정으로 하되, 채용 시 소속은 기재
 ※ 기타 추가되는 인원은 자유롭게 양식 변형하여 작성
 ※ 사례관리 전담인력의 자격을 정확하게 기재(사회복지사 1급 등)
 ※ **인력확대의 경우, 구체적인 역할 및 근무배치(예시)포함**

구분	성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	전공 및 학위	담당 업무	해당사업 수행기간 (개월)	상근/비상근	인건비 수령여부

※ 사업수행 인력은 구분란에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기존인력과 해당 사업을 위한 신규인력, 자문 인력을 구분하여 표시

8. 자체평가 계획

- ※ **사업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 재공모 기관은 최근 3년간의 사업수행 결과를 평가하고, 개선방안 제시

9.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

- ※ **사업결과의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관 내에서 사업효과를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 등을 기술

10. 사업추진 일정

사업내용	월 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1. 평가참고 사항

가. 사업수행조직 전체의 조직구성(조직도 제시)

나. 응모 분야와 관련된 그간의 사업 추진성과

- ※ 개조식으로 기술(최근 3년간의 내용을 중점 기술, 실적지표 중심으로)
- ※ **응모 기관이 본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 등 기술

다. 사업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극복방안

- ※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처 방안**

라. 사업수행기관 연혁 및 설립배경 등

◆ [참고①] 예산 항목별 설명

비목명	세목명	내역
인건비	보수	•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의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일용임금	•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24시간 운영기관만 해당)
운영비	일반수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용품 구입비 • 인쇄비 및 유인비 •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소모성 물품* 구입비 *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대상(소모성 물품은 제외)이 아닌 물품에 대한 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품수선비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수수료, 물품운송대금 등 - 검정료, 감정료, 위탁정산수수료 등 - 회의비 및 경비 - 강사료 • 국내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요금, 전신·전화 요금 등 회선 사용료 - 전기, 가스, 상·하수도료 • 제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
	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 각종 시설 및 장비리스
	복리후생비	•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자부담금
	기타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비 및 재료비 • 시도자 지원비
여비	국내여비	• 사업과 관련된 국내 출장 시 지급되는 경비
직무수행 경비	직무수행 경비	• 사업 관련하여 부여된 직책 수행을 위해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유형 자산	자산취득비	• 사업의 특성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집기 및 비품 구입 시 지급되는 경비

◆ [참고②] 예산 작성 시 참고사항

구 분	산 정 기 준
인건비	<p>□ 사례관리 인력은 <u>기관 운영형태에 따라*</u> 고용하고 기존인력** 인건비는 산정할 수 없음</p> <p>* 1인 기관: 1명, 2인 기관: 2명, 3인 기관: 3명, 24시간 운영기관: 최소 5명, 최대 8명</p> <p>** 기존 인건비: 응급실 사업수행과 무관하게 사업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던 인력</p> <p>→ 인건비 산정 예시: 2,324천원(정신건강전문요원 1호봉) * 12개월 * 2인</p>
여비	<p>□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내·외출장비(일비, 식비, 숙박비, 운임 등)</p> <p>- 시내출장은 4시간 미만 1명 1일당 1만원 (4시간 이상 2만원)</p> <p>- 시외출장은 4시간 미만 1명 1일당 1만원 (4시간 이상 2.5만원)</p> <p>· 시외출장 여비 산정 예시 : 숙박비(5만원), 일비(2.5만원), 식비(2.5만원) 운임(실비*) 계상 가능</p> <p>* 숙박비는 2일 이상의 출장 시에만 가능하며 이외에는 불가</p> <p>** 항공, 철도, 고속버스 기준(택시, 전철, 시내버스 지급 불가, 부득이하게 자가용 이용 시 연료비, 통행료 지급 가능)</p>
운영비	<p>□ 사업수행에 관련된 인쇄, 복사, 슬라이드 제작, 현상, 사무용품,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비품 수선비(집기류 등), 각종 수수료* 등</p> <p>* 용도가 특정되지 않거나 증빙이 불가한 각종 기관운영비(위탁관리비, 산학수수료 등) 책정 불가</p> <p>(회의비 및 경비)</p> <p>- 사업수행에 필요한 원내회의 및 원외 회의에 사용되는 회의비 등</p> <p>- 전문가 초청 자문료, 세미나 개최, 평가에 사용되는 감사비 등</p> <p>→ 내부인력*의 수당 계상 불가</p> <p>* 내부인력 : 생명사랑위기대응팀 인력(센터장, 부센터장, 의료진(응급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사회사업실), 사례관리자)</p> <p>· 수당 : 최대 1일 100,000원</p> <p>· 경비 : 최대 1인당 20,000원 이내</p> <p>* (식비) 원내회의 10,000원, 원외회의 20,000원 / (다과비) 5,000원</p> <p>(강사료)</p> <p>- 교육 및 특강에 대하여 지급되는 비용</p> <p>· 대학교수, 의사 및 이에 준하는 인사 등: 1시간 250,000원</p> <p>* 1시간 초과시마다 120,000원 지급</p> <p>· 대학강사 등 겸임교수 및 이에 준하는 인사 등: 1시간 150,000원</p> <p>* 1시간 초과시마다 80,000원 지급</p> <p>** 이 외의 강사: 1시간 100,000원(1시간 초과시 마다 50,000원)</p> <p>(국내교육비)</p> <p>- 사례관리자의 업무 관련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 등(1인 연 20만원 이내)</p>
위탁 정산 수수료	<p>□ 사업수행 예산의 집행·정산 관련 업무 위탁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p> <p>* 당해연도 사업 종료시 위탁정산회계법인 정산을 받을 때 사업예산 규모에 따른 위탁 정산수수료를 표준액에 맞게 계상</p>

구 분		산 정 기 준
임차료	□ 사례관리자 사무공간 임대 시 임차료 및 관리비로 월 100만원 이내 가능	
	□ 자살시도자 의료비 지원 →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산정 가능 □ 사례관리 수행에 따른 소요경비 → 사례관리 과정에서 자살시도자에게 소요되는 교통비 등 필요경비(연 30만원 이하)	
직무수행 경비	□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부)센터장 활동비(인당 최대 100만원) → 사업수행에 따른 활동비로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책정 가능	
자산취득비	□ 사업 특성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집기 및 비품에 한하며, 사무용 책상, 컴퓨터, 핸드폰 등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입하는 집기비품비 일체 → 전체 예산의 5%(24시간기관은 3%)를 초과하여 계상 불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 승인 필요) → 단, 신규기관에 한해 10% 이내에서 사전 승인 후 계상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항목은 추후 집행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비 산정 내역은 심사 시 주요 평가 항목의 하나이므로 적정 사업비 산출에 유의 요망 ○ 사업비 산출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비목별 사업비 계상(합산) 시 1,000원 미만은 절사 - 비목별로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며, 필요시 표 하단에 상술 가능 		